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 - 0428호

「국가표준기본법」 제23조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/IEC 17011에 의거「시험/교정 결과와 규격과의 적합성 보고 방법」(KOLAS-G-003,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-0075호, 2012.02.17.)을 폐지·제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02일 국가기술표준원장

「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」 폐지·제정 고시

1. 폐지·제정이유

국제표준(ISO/IEC 17025 -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사항) 및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(ILAC) 지침 문서(ILAC G8 - Guidelines on Decision Rules and Statements of Conformity) 전부 개정에 따라 기존 「시험교정 결과와 규격과의 적합성 보고 방법」을 폐지하고 국제문서를 부합화한 「의사결정 규칙 및 적합성 진술에 관한 지침」을 제정하고자 함

2. 제정내용

- 가. 국제표준(ISO/IEC 17025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일반요구 사항) 개정 내용 반영(안 제2장, 제3장 등)
- 나. 보호대역과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규칙에 대한 개관 및 해설(안 제4장, 제5장, 제6장 등)
- 다. 의사결정 규칙 흐름도 신설 및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의사결정 규칙 문서화 부분에 대한 해설(안 제7장, 제8장 등)
- 라. 참고문헌 최신화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